

제4장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 Ⅱ





학습개요

핵심 POINT

-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의 원칙과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한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다양한 업무처리 방법을 숙지한다.

(무통장 입금 관련 정보제공, 상속인앞 정보제공, 어음·수표 관련 정보제공 등)

-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신분상의 조치가 있음을 안다.

대출고객 잠수 사건





비밀보장제도 개요

원칙

✓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거래정보 등을 알게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 (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 포함)는 위반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 대상임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

- 금융기관의 임직원
- 대리인
- 사용인
- 기타 종업원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음)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비밀보장 대상내용

- ▶ 금융거래 사실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부
- ▶ 금융거래내용이 기록된 장표, 전산기록의 원본 및 사본
- ▶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

- ✓ 업무용 조회자료 등 생산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
- ✓ 폐기장부는 은행과 계약한 폐기업자에게 처분조치

비밀보장 제외대상

- ▶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한 통계자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 ▶ 1993.8.12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거래로서 예금주를 알 수 없는 자료
 - ▶ 순수한 대출.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사항여부 확인
- ▶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정보 (내용물??)
 - ▶ CCTV화면 관련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거래 정보제공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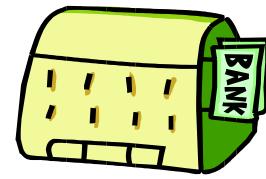
◆ 일반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 흐름도

정보제공요구자



- 실명법상 가능한 경우
- 타법률에 의해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 ④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기록관리

명의인



- ⑤ 명의인앞 통보

- ① 정보제공요구
(표준양식)

- ② 통보비용 지급

- ③ 정보제공



-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 가능



실명법 및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일부)

실명법상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타법률

-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재산등록사항 심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 조사)
-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정치자금의 수입.지출)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참고]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은행의 공동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량거래처 규제, 거래정지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무통장입금, 계좌송금(타행송금 포함) 등과 관련한 오류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세금우대저축 등과 관련한 위규.중복계좌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협약 등에 의하여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 간의 금융자산
이체 업무를 취급하는 자(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부정수표 고발장 작성을 위하여 수표 지급은행이 수표제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팩스, 전문 등에 의한 요청을 받고 수표제시인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 등 제공가능
- 어음할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발행인에 대한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등)
제공 요청시
 - 팩스 등에 의한 서면요청을 받고 제공가능(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서면요청
생략가능)
-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정보교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금융기관간 공동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
-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팩스 등에 의한 서면요청에 한함)
- 햅살론 취급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금융회사등에 동 조회표의 발급사실 및 기재내역의 진위여부 확인
을 Fax등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급 금융회사등이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회신하는 경우



정보제공 요구방법 (실명법 제4조 제2항)

일반사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제공 가능
(FAX요청시도 가능)

❖ 명의인의 인적사항

(다음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함)

- 명의인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명거래시에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 · 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 | | | | |
|-----------|-------------------------|-----|-----|-------|
| 문서 번호* | | | | 요구 일자 |
| 요 구 기 관 명 | | | | |
| 요 구 자 | 근 무 부 서 | 직 책 | 성 명 | |
| 담당자 | | | | |
| 책임자 | | | | |
| 요 구 내 용 | 명의인의 인적사항 ¹⁾ | | |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
| | 요구의 법적 근거 | | | |
| | 사용 목적 | | | |
| |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 | | |
| 통보유예* | 유예 기간 | | | |
| | 유예 사유 | | | |
| 특이사항* | | | | |

요 구 기 관 기 관 장 ^④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 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방법(1)

정보제공 범위

※ 금융거래요구자별
업무처리방법 참조

정보제공사실 기록.관리의무

정보제공 사실 통보

➤ 甲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甲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 甲의 계좌에 乙이 일정액을 입금했다는 사실
- 甲의 계좌에서 丙의 계좌로 일정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 乙과 丙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 제공 가능
- 乙과 丙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거래금융기관에 별도의 정보요구 절차가 필요함

- 금융기관이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
- 관련서류 보관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

➤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내용
 - 정보 등의 사용목적
 -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 정보 등의 제공일자 등
- ※ 통보는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자의 최종주소지로 함
- ※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록관리는 하되 통보는 생략



[상황 1]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예금주의 요구



주거래우대통장을 거래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제 저축예금통장의 3년전 거래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Who are you??

명의인 확인

예금주 명의인이 틀림없는가? - **실명확인** (필요시 정보제공의뢰서 징구)

인터넷뱅킹, ARS

예금주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송금(잔액)조회 정보제공 가능
☞ 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추가로 결제계좌와 결제금액 제공 가능

공동명의예금

명의인 앞 정보제공 : 명의인 중 1인의 요구시도 정보제공 가능
명의인 동의로 제3자앞 정보제공 : 명의인 전원의 동의필요

예금 양도시

양도인앞 정보제공 : 양도일 전일까지의 금융정보
양수인앞 정보제공 : 해당계좌의 모든 금융거래정보제공

중요

무통장입금 정보

- 입금받은 예금주에게 정보제공하는 경우

- 입금의뢰인(송금인) 및 대리인의 성명/연락처만 제공 가능(계좌번호, 실명확인증표 등 불가)
 - 입금자원 중 수표로 입금된 내역(발행은행, 수표번호 등)은 정보제공 불가
- 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정보제공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의뢰서(입금하실때 전표)에 기재된 정보 외의 인적사항 제공 불가

[참고]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예금주 서면요구



신한은행

정보제공 요구(동의)내용을
지점(출장소) 구체적으로 표시함

본인이 귀환과 거래하고 있는 아래 계좌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요구(동의)내용

| 예금 종류 | 계좌 번호 | 정보 내용 |
|-------|-------|---|
| | |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표 (대상기간 : ~) <input type="checkbox"/> 거래실적조회표 (대상기간 : ~) <input type="checkbox"/> 종합 C.I.F 조회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계좌조회표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생변제금 납부내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하는 것을 V표하고 기타의 경우는 별도내용을 기재 |

* 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 | | |
|--------------------------------------|------------------------------|---------|---------------|---|---|---|
| 의뢰인 (동의인) | 성명 | @ 또는 서명 | 생년월일/주민번호/별자리 | 년 | 월 | 일 |
| | 주 소 (주택, 직장 등 선택가지 가능)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연락처 (주택, 직장, 휴대폰 등 선택가지 가능) | (주택) | 휴대폰 | - | - | | |
| | (직장) | 이메일 | @ | | | |

- 주) 1. 명의인의 담당 해당 거래인감·서명(서명감 포함)을 날인.
단,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 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함.
(공무집신분증 사본 및 첨부 보관)
2.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증확인증자 사본은 뒷면에 첨부(복사 가능)



| | | |
|-----------------|-----|-----|
| 본인 확인 및 인증대조 | 담당자 | 확인자 |
| | | |

- ❖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 명의인인지 여부 확인
- ❖ 명의인 외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

동의서 기재사항

- ① 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 ② 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 ③ 제공할 정보 등의 내용
- ④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 ⑥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다만, 명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함



[상황 2] 자기앞수표 관련인에 의한 정보제공



지급거절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입니다. 사고신고인과 연락하여 해결하려고 하니 연락처를 알려주시오.

자기앞수표 관련인별 정보제공 가능 내용은??

발행의뢰인의 요구시

해당수표 발행사실과 **수표앞면내용** (수표 앞면만 사본제공 가능)

최종소지인 요청시

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의 정보제공 가능** (수표 앞·뒤 사본제공)

부도수표 소지인이
사고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요구
(전화요청 포함)

사고 신고서상 기재된 정보제공 (O)

※유의 : 사고신고인과 발행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X)

사고신고인에게는??

수표지급제시인, 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X)



[상황 3] 약속어음/당좌수표 소지인에 의한 정보제공



김갑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입니다. 발행인이 현재 신한은행 OO지점과
당좌예금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도발생 사실은 없었습니까?

제공 가능 정보

<발행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 ① 당좌(가계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
- ② 부도발생 여부 및 내용
- ③ 예금주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

전화 등에 의한 요청 포함
(번호, 발행인)

부도 실물을 소지인이 제시하는 경우

- ① 부도확인된 어음.수표 발행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가능
- ② 부도내용 (부도금액, 부도시기 등) 제공가능